

대법원
제3부
결정

등본입니다
2006. 12 월 일
대법원 재판사무제2과
법원사무관 송환



사건 2006모523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재항고인 김명호

서울동작

피의자 1. 이용훈

2. 이광범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2006. 9. 11.자 2006초기317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정신청을 기각한 것은 정당하고, 달리 원심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大法院

2006. 11. 29.

재판장

대법관

이홍훈



주심

대법관

김영란



金英蘭

대법관

김황식



대법관

안대희

